

# 「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필요함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
- 추진근거
 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- 2)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
  - 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  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  - 5)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 2025. 1.)
- 위탁사무: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 전반
  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
    - ※ 공개경쟁 입찰(구미시 및 인근 지역 업체 우선 선정)
  - 슬레이트 면적 조사 실시  
(위탁기관, 철거업체, 건축소유자 3자 확인 조사)
  - 슬레이트 처리 현장 관리·감독 및 안전교육 등

○ 위탁기간: 2026년 ~ 2027년(2년간)

○ 사업량 및 소요예산(2026년 기준)

1) 사업량: 슬레이트 철거 100동(주택 87동, 비주택 13동), 지붕개량 11동

2) 소요예산: 445,520천원(지특 50%, 도비 15%, 시비 35%)

(단위: 천원)

총 계	슬레이트 철거			지붕개량
	계	주택	비주택	
445,520	376,440	306,240	70,200	69,080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1) 선정방법: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2) 평가내용: 사업 수행 능력, 사업계획 적정성 등 종합 심사

3) 평가방법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○ 적정성 검토결과: 적정 ※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##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(환경부, 2025. 1.)

○ 예산조치: 2026년도 예산편성

# 구미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성과평가

## 1. 평가개요

가. 위탁사무명: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

나. 위탁기관: (사)한국석면안전협회

다. 위탁기간: 2024년 ~ 2025년(2년간) ※ 사업은 1년 단위로 시행

라. 사업비: (2024년) 982,800천원, (2025년) 814,500천원

마. 평가내용: 위탁기간 내 수행능력 평가

## 2. 평가결과: 우수(86.3점)

부문 평가항목 (배점)	총점 (100)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	감점 요소
	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안전관리 (20)	사업성과 (10)	만족도 (20)	
평가점수	86.3	8	9.7	8.3	9	17.7	16.3	17.3	0

## 3. 총 평

가. 체계적인 조직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슬레이트 해체·제거·운반·처리 및 지붕개량까지 사업의 연속성 및 위탁운영이 우수함

나. 또한, 슬레이트 처리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철저하며 철거 일정 조율 등 사업 관련 민원해결에 적극적임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, 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슬레이트 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과 석면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할 때,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사업은 국비(지방특별교부세)와 도비 의존도가 높아,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큼. 이에 따라 철거 대상지와 사업 신청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지원대상 선정과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, 철거 후 지붕만 철거된 빈집이 방치되어 흉물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연계망 구축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